

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3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불산 누출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, 주택,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
2013년 재산세 감면

가. 축사 및 농업용 창고는 재산세를 면제하고,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 피해금액 만큼 감면(피해금액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제)

나. 주택 및 농지는 재산세 면제

다. 임야는 피해면적 만큼 재산세 감면

3. 참고사항

가. 불산 누출 피해자 감면예상액 : 불임

나. 관계법령 : 불임

다. 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(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-3177, 2012.10.09)

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

구미시장이 제출한 불산누출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구미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감면대상 : 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축물·주택·농지와 임야

2. 감면내역 : 2013년 재산세

가. 건축물 : 축사 및 농업용 창고는 재산세를 면제하고,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 피해금액(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보상조서의 건물피해 지원금)만큼 재산세를 감면(피해금액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제)한다.

나. 주 택 :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.

다. 토 지 : 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, 임야는 피해면적만 재산세를 감면한다. 단, 건축물 부속토지와 대지는 제외한다.

3. 감면 예상액

(단위:백만원)

세 목	예상세액	산 출 근 거	비 고
재 산 세	222		
건축물	26	공장 59동, 축사 및 농업용 창고 33건	
주 택	33	272명 317동, 다가구 9동	
토 지	163	농지 943명 4,489건, 임야 75명 25필지	

※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조서 기준

관 련 법 령

[지방세특례제한법]

제4조 【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】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[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]

제2조 【지방세 감면규모 등】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"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壊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⑥ 시장·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.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제3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적조(赤潮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

다. 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참 고 자 료

전기절약,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



행정안전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

1.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,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,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,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등과 관련 됩니다.

2.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 불산 피해 주민에 대한 ‘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’을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여 지방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. 끝.

행정안전부장관

수신자 경상북도지사(세정과장), 구미시장(세무과장)

주무관

행정 사무관

지방세운영과장

협조자

시행 지방세운영과-3177 (2012.10.09.) 접수 세무과-19891 (2012.10.10.)

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(세종로1가 77-6) / <http://www.mopas.go.kr>

전화 02-2100-3941 / 전송 02-2100-4322 / lim12188@mopas.go.kr / 공개

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

경북 구미 지역 「불산가스」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임

※ 특별재난지역 선포 : 10월 8일,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

□ 지원대상

- 불산가스 누출로 농작물, 가축, 차량 등 피해를 입은 주민

※ (10.8. 현재) 농작물(고사) 212ha, 가축(이상증세)3,209두, 차량(부식) 1,086대, 기타(건물부식·양봉폐사) 177건

□ 지원내용

- (기한연장)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신청 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6개월(최대 1년까지) 범위 내 연장

※ 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(취득세, 지방소득세 등)

- (징수유예)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, 체납처분 등을 6개월(최대 1년까지) 유예

※ 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(재산세, 자동차세 등)

- (자동차세 면제) 자동차 등이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

- (취득세 면제) 창고·축사, 자동차 등의 부식으로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

※ 근거 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

- (지방세 감면) 농작물, 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창고·축사 등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

→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가능

※ 근거 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

(주)휴브글로벨 불산누출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계획 예고

구미시 공고 제2013-1027호

2012년 9월 27일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에게 지방세 지원을 하여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.

2013. 8. 7.

구미시장 남 유 진

1. 예 고 명 : 불산누출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계획 예고
2. 예고취지 : 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2013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함
3. 감면 근거 및 절차
 - 가. 감면 근거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(천재지변 등 감면)
 - 나. 절 차 :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
4. 감면 내역
 - 과세대상 : 2013년 재산세 7월(주택, 건축물) 및 9월(주택, 토지)
 - 감 면 율 : 감면대상별 차등 감면
 - 피해를 입은 건축물(공장) 피해율별 재산세 차등 감면
 - 피해를 입은 주택 및 농지 재산세 면제
 - 피해를 입은 임야 피해면적만 재산세 감면
 - 감면방법 : 납세자의 신고 또는 시장이 직권 조사·감면
5. 기타 문의

구미시 세무과(전화 : 054-480-6864, E-mail : gumi2009@korea.kr)